

2026년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 스케일업 팀스, 글로벌 팀스,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

2026년 스케일업 팀스, 글로벌 팀스,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운영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공고일 현재 일반형 운영사의 경우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중으로 운영사 연락처 등 관련한 정보는 최종 선정 이후 3월 9일(월)에 게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 유망성 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중소기업에 성장 단계별 R&D지원을 통해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 도전·혁신적 R&D에 중소기업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출제, 민간투자자와 연계한 R&D 지원

□ 사업현황

내역사업명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한도	신청·접수
스케일업 팀스	일반형	200개 내외	36개월	20억원	(1차) 5월, (2차) 7월
	특화형	50개 내외	36개월	30억원	(1차) 4월, (2차) 7월
	정책지정형	50개 내외	36개월	30억원	부처별 별도 공고 예정
글로벌 팀스	일반형	90개 내외	48개월	50억원	(1차) 5월, (2차) 7월
	특화형	5개 내외	48개월	60억원	(1차) 4월
	정책지정형	5개 내외	48개월	60억원	부처별 별도 공고 예정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DCP)	기술도전형	35개 내외	36개월	50억원	RFP 게시일로부터 2개월
	생태계혁신형*	5개 내외	48개월	200억원	(1차) 2~4월

* 공고문 참조('26.1.8 발표) : 제2026-12호, 「2026년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 시행계획」

2.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지원계획 주요 변경 사항												
		'25년	'26년											
접수시기	스케일업 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반기 각 1회 접수 (총 2회) * 단, 정책지정형은 상반기만 1회 접수 											
	글로벌 팁스													
지원규모	스케일업 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1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형) 3년 20억원 (특화형) 3년 30억원 (정책지정형) 3년 30억원 											
	글로벌 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1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형) 4년 50억원 (특화형) 4년 60억원 (정책지정형) 4년 60억원 											
	DCP (기술도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3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도전형) 3년 50억원 (생태계혁신형) 4년 200억원 											
신청자격	스케일업 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유치 (비수도권 기업은 7억원 이상 투자유치) 											
	글로벌 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세부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세부 조건 (택1)</td> <td>해외 VC로부터 100만달러 이상 투자 유치</td> </tr> <tr> <td>최근 3년간의 누적 해외매출액이 50만달러 이상</td> </tr> <tr> <td>해외 사무소, 법인 등 현지 활동 기반 보유</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케일업 팁스 일반형과 글로벌형 동시수행 불가 	구분	주요내용	세부 조건 (택1)	해외 VC로부터 100만달러 이상 투자 유치	최근 3년간의 누적 해외매출액이 50만달러 이상	해외 사무소, 법인 등 현지 활동 기반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요건(2개) 중 1개를 충족하는 기업 - (요건 1)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세부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 (비수도권 기업은 10억원 이상 투자유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세부 조건 (택1)</td> <td>해외 VC등으로부터 100만달러 이상 투자 유치</td> </tr> <tr> <td>최근 3년간의 누적 해외매출액이 50만달러 이상</td> </tr> <tr> <td>해외 사무소, 법인 등 현지 활동 기반 보유</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건 2) 해외 VC 등으로부터 200만달러 이상 투자 유치 스케일업 팁스와 글로벌 팁스 동시수행 가능 (단, 글로벌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스케일업 팁스 참여 불가) 	구분	주요내용	세부 조건 (택1)	해외 VC등으로부터 100만달러 이상 투자 유치	최근 3년간의 누적 해외매출액이 50만달러 이상
구분	주요내용													
세부 조건 (택1)	해외 VC로부터 100만달러 이상 투자 유치													
	최근 3년간의 누적 해외매출액이 50만달러 이상													
	해외 사무소, 법인 등 현지 활동 기반 보유													
구분	주요내용													
세부 조건 (택1)	해외 VC등으로부터 100만달러 이상 투자 유치													
	최근 3년간의 누적 해외매출액이 50만달러 이상													
	해외 사무소, 법인 등 현지 활동 기반 보유													
가점	스케일업 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수도권 소재 기업 최대 5점 ESG 분야 영위 기업 2점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업 1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 가점 미적용 											
	글로벌 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 가점 적용 												

3. 내역사업별 지원계획

(1) 스케일업 팁스

□ 지원목적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투자사)의 기업선별 및 성장지원, 자본력 등을 통해 先민간투자, 後정부 매칭방식으로 지원하여 성장단계 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및 스케일업을 촉진

□ 지원대상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투자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중소벤처기업

- * (기간)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투자유치만 인정
- (단위) 운영사(투자사)의 단독·단건의 투자유치만 인정
- (지역) 비수도권 소재 기업(본사 기준)의 경우 7억원 이상 투자유치 인정

※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원규모 : 300개 과제 내외(일반형 200개, 특화형 50개, 정책지정형 50개)

□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운영방식
일반형 (자율 경쟁)	• 유망기업을 선별, 투자 후 대학, 연구소, 대·중견 기업, 전략 컨설팅 기관 등 다양한 전문그룹과 함께 매칭하여 과제에 참여한 컨소시엄을 지원	• 추천권 부여 없이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특화, 일반)모두 참여 가능한 과제단위의 자율경쟁 방식으로 운영
특화형 (운영사 추천)	• 특화 운영사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전략적 우선순위 및 기술 파급력이 높은 6대 전략산업(ABCDEF) 집중 지원	• 특화 운영사에게 T/O 범위 내, 일정 배수 만큼 추천권을 부여하고 전략분야의 유망 기업을 선별 투자 후, 부여 받은 추천권을 활용하여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
정책지정형 (부처 협업)	• 부처별 정책 수요, 중점 지원전략 등에 따라 발굴·추천한 기업에 대해 민간투자자와 연계하여 지원	• 부처*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추천하면 팁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 (5개 부처) 과기부, 복지부, 농림부, 지재처, 우주청

□ **지원분야**

-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탄소중립 분야,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 **지원조건** : 최대 3년, 20~30억원 지원(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일반형	최대 3년, 20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자율 경쟁)
특화형	최대 3년, 30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운영사 추천)
정책지정형	최대 3년, 30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부처 협업)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일정**

구분	지원규모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일반형	상반기(1회)	100개 내외	5월	6~7월	8월
	하반기(1회)	100개 내외	7월	8~9월	10월
특화형	상반기(1회)	25개 내외	4월	5~6월	7월
	하반기(1회)	25개 내외	7월	8~9월	10월
정책지정형	상반기(1회)	50개 내외	부처별 별도 공고 예정		

※ 지원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정책지정형” 사업은 지원분야, 일정, 평가지표 등 세부사항에 대해 부처별 별도 공고(3월)를 통해 안내 예정

(2) 글로벌 팀스

□ 지원목적

-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투자사)의 기업선별 및 성장지원, 자본력 등을 통해 先민간투자, 後정부 매칭방식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진출 단계 유망기업에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 지원대상

- 아래 2개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

* 국외 창업 법인을 모회사로 두고 국내 법인을 자회사로 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 경영권 관계, 연구성과물 및 국내 경제 기여도 등 적격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 검증

※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요건 ①)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투자사)로부터 1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아래 세부조건 中 1개 이상 충족

* 비수도권 소재 기업(본사 기준)의 경우 10억원 이상 투자유치 인정

구분	주요내용
세부조건 (택1)	해외 VC 등으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 투자 유치
	최근 3년간의 누적 해외매출액이 50만 달러 이상
	해외 사무소, 법인 등 현지 활동 기반 보유

- (요건 ②) 해외 VC 등으로부터 200만 달러 이상 투자(단건) 유치

※ 先투자 인정 기준

구분	내내역사업	기업(본사) 소재지	인정 기준
요건 ①	일반형, 특화형, 정책지정형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5억원 이상 투자 (10억원 이상(단건) + 5억원(단건) 인정)
		비수도권 (수도권 외)	10억원 이상 투자 (단건만 인정)
요건 ②	일반형, 특화형, 정책지정형	지역 구분 없이 해외 VC 등으로부터 200만 달러(단건) 이상 투자유치 인정	

※ (기간)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투자유치만 인정

※ (단위) 운영사(투자사)의 단독(누적*) 투자만 인정

* 단, 해당 투자 간 시점 차이가 6개월 이내인 투자 건만 누적으로 인정

□ **지원규모** : 100개 과제 내외(일반형 90개, 특화형 5개, 정책지정형 5개)

□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운영방식
일반형	• 유망기업을 선별, 투자 후 대학, 연구소, 대·중견 기업, 전략 컨설팅 기관 등 다양한 전문그룹과 함께 매칭하여 과제에 참여한 컨소시엄을 지원	• 추천권 부여 없이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특화, 일반) 모두 참여 가능한 과제단위의 자율경쟁 방식으로 운영
특화형	• 특화 운영사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전략적 우선순위 및 기술 파급력이 높은 6대 전략산업(ABCDEF) 집중 지원	• 특화 운영사에게 T/O 범위 내 일정 배수 만큼 추천권을 부여하고 전략분야의 유망 기업을 선별, 투자 후 부여 받은 추천권을 활용하여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
정책지정형 (부처 협업)	• 부처별 정책 수요, 중점 지원전략 등에 따라 발굴·추천한 기업에 대해 민간투자자와 연계하여 지원	• 부처*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추천하면 팁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 (3개 부처) 과기부, 복지부, 농림부

□ **지원분야**

-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탄소중립 분야,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 **지원조건** : 최대 4년, 50~60억원 지원(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일반형	최대 4년, 50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자율 경쟁)
특화형	최대 4년, 60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운영사 추천)
정책지정형	최대 4년, 60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부처 협업)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일정**

구분	지원규모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일반형	상반기(1회)	45개 내외	5월	6~7월	8월
	하반기(1회)	45개 내외	7월	8~9월	10월
특화형	상반기(1회)	5개 내외	4월	5~6월	7월
정책지정형	상반기(1회)	5개 내외	부처별 별도 공고 예정		

※ 지원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정책지정형” 사업은 지원분야, 일정, 평가지표 등 세부사항에 대해 부처별 별도 공고(3월)를 통해 안내 예정

(3)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기술도전형

□ 지원목적

-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벤처가 도전적·혁신적 R&D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민간투자자와 연계한 R&D 지원

□ 지원대상

- 신청 RFP의 최초 게시일 이후, 투자기관으로부터 20억원 이상 투자(확약 포함) 받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프로젝트팀’

* 해외 선도기관과의 R&D 협력이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필수

※ 대기업·중견기업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연구기관 인정 범위 >

- 가. 국공립연구기관
-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

< 투자기관 및 투자유형은 공고에 명시된 기관·유형만 허용 >

구분	세부내용
투자인정 조건	① 벤처투자회사,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③ 벤처투자조합, ④ 신기술투자조합, ⑤ 창업기획자, ⑥ 외국투자회사
투자유형	신주발행(보통주, 우선주), 신권발행(CB, BW)

□ **지원규모** : 35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투자사·연구기관 등과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정부가 제시한 RFP의 기술개발을 신청하면, R&D 자금을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 **지원분야** : 전략기술 Bank*에 게시된 RFP 확인

* 홈페이지 주소 : www.scaleuptips.or.kr/page/dcp-bank

□ **지원조건** : 최대 3년, 50억원(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기술도전형	최대 3년, 50억원	75% 이내	지정공모 (자율 경쟁)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일정**

구분	지원규모	선정평가	협약체결
2분기	10~15개 내외	5~7월	6~7월
3분기	15~20개 내외	7~9월	8~9월
4분기	5개 내외	10~12월	11~12월

※ 전략기술 Bank에 RFP를 게시한 날로부터 2개월(60일) 간 신청·접수 진행

(단, 해당 기간 내 미접수 또는 선정 과제가 없는 RFP는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

※ 지원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5년 미지원 RFP 14개는 '26년 전략기술 Bank와 연계하여 통합 지원[별첨4]

4. 가·감점 기준

※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특화형), 글로벌 팁스(일반형, 특화형)만 적용

□ 가점(최대 8점)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
TIPS연계 (최대 5점)	후속 투자 유치, 주요 성과 달성, 높은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올해의 TIPS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5점	한국엔젤 투자협회
	접수마감일 최근 3년 이내 팁스R&D(창업성장기술개발-TIPS과제) 수행 후 "우수", "보통"판정 받은 기업	3점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포스트팁스(Post-TIPS)에 선정되어 사업화 자금을 모두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기업 (협약체결 후 제외대상으로 요건 제외 된 경우 제외)		
글로벌 진출	최근 3년 이내 "K-GLOBAL STAR" 기업선발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	2점	한국벤처투자
Jump-up	접수마감일 기준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된 기업	2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지역균형 (최대 5점)	본사(본점)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고, 협약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확약서 제출)	3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등 온라인 발급 가능
	공장*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고, 협약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확약서 제출) * 공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2점	
사회적 가치	기후테크, 소셜벤처 등 ESG 분야 영위 기업	2점	전문/업무 지원기관
기타	벤처기업 인증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최대 1점	벤처기업협회 / 이노비즈협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1점	고용노동부 등

□ 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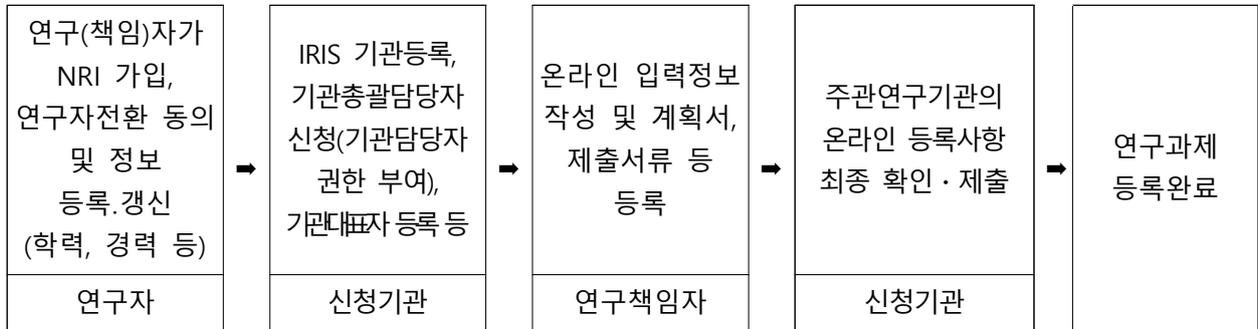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업무 지원기관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5.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정책지정형은 부처별 세부공고 예정

□ 신청방법

-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공고명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 검색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 차수 별 접수마감일의 18시(18:00:00)까지 접수 마감



□ 선정절차

['일반형' : 스케일업 팁스 & 글로벌 팁스]

< 일반형 선정절차 >



* 컨소시엄 구성 필수

- ① **컨소시엄 구성** : 스케일업·글로벌 팁스 일반형 사업에 참여를 희망 중소기업은 운영사(투자사*),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신청 준비
 * 글로벌 팁스 "요건 2" 해당 기업은 운영사를 제외하고 컨소시엄 구성 가능
- ② **신청·접수** : 구성된 컨소시엄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수

③ **사전검토** : 접수된 과제에 대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 해약)로 처리

④ **선정평가**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선정평가 진행

* 선정평가는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

⑤ **지원과제 확정**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지원 과제를 확정

['특화형' : 스케일업 팁스 & 글로벌 팁스]

< 특화형 선정절차 >



① **유망기업 추천** : 특화 운영사는 자체 심사 등을 통해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 후, 투자하여 TIPA에 추천

- ※ 추천 한도 : 운영사별 연간 배정된 추천 한도(T/O) 내에서 추천 가능
- ※ 글로벌 팁스(요건 2) : 해당 기업은 운영사 추천 절차 없이 직접 신청·접수
- ※ 세부사항 : 추천 세부 계획, 일정, 방법 등은 특화 운영사에 별도 문의

② **신청·접수** : 특화 운영사로부터 추천된 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수

③ **사전검토** : 접수된 과제에 대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 해약)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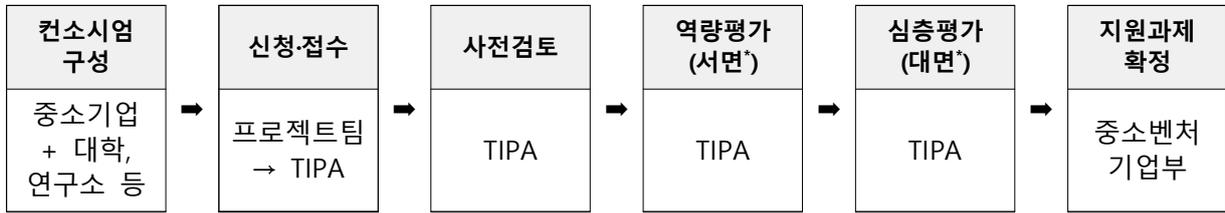
④ **선정평가**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선정평가 진행

* 선정평가는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

⑤ **지원과제 확정**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지원 과제를 확정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기술도전형']

< DCP 기술도전형 선정절차 >



- ① **컨소시엄 구성** : DCP 기술도전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글로벌 R&D 협력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신청 준비
- ② **신청·접수** : 전략기술 Bank에 게시된 RFP에 대해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수*
 - * 프로젝트팀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참여기관(중소기업)은 RFP 1개에 대해 2회에 한해 신청 가능
- ③ **사전검토** : 접수된 과제에 대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 해약)로 처리
- ④ **선정평가**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선정평가(역량·심층평가) 진행
 - (역량평가) 연구개발계획서·기업성장전략서 기반 기술 혁신성, 기술개발 구체성, 사업화 계획, 글로벌 성장가능성 등을 서면평가
 - (심층평가) 연구개발계획서·기업성장전략서 기반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컨소시엄 R&D 역량, 글로벌 시장 확장전략, 팀 구성 및 역할 등을 대면평가
- ⑤ **지원과제 확정**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지원 과제를 확정

6. 제출서류

※ 정책지정형은 부처별 세부공고 예정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스케일업 팁스(일반형·특화형)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6. 5. 1.로 기재 * (1차) '26. 5. 1. / (2차) '26. 8. 1. / (정책지정형) 별도 안내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한글 20페이지 또는 PPT 30페이지 이내 권장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 붙임 서류는 본문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1	○	
		본문2	○	
		붙임1	○	
		붙임2		○
		붙임3	○	
②	• 스케일업 팁스 추천서		○	
③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④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⑦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⑧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 글로벌 팀스(일반형 · 특화형)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6. 5. 1.로 기재 * (1차) '26. 5. 1. / (2차) '26. 8. 1. / (정책지정형) 별도 안내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한글 20페이지 또는 PPT 30페이지 이내 권장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 (붙임4) 글로벌 진출 전략서 ※ 붙임 서류는 본문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1	○	
		본문2	○	
		붙임1	○	
		붙임2		○
		붙임3	○	
		붙임4	○	
②	• 글로벌 팀스 추천서			○
③	• 글로벌 자격요건 증빙서류 일체(상세 서류 목록 [별첨3] 참조)		○	
④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⑤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u>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u>.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⑦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⑧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⑨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기술도전형)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개발기간 시작일은 신청 월의 첫째 날로 기재 (예. 6월 접수 시 '26. 6. 1)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페이지 수 제한 없음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본문1	○	
		본문2	○	
		붙임1	○	
		붙임2		○
		붙임3	○	
②	• 기업성장전략서		○	
③	•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확약서 * 확약기업의 경우 투자(예정) 확약서 우선제출 후 투자계약서 제출		○	
④	• 투자현황 요약표		○	
⑤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⑥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⑦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u>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u> .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⑨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⑩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7. 추가 검토사항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연구개발 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내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및 졸업제를 적용하지 않음
- 세부 프로그램별 등 신청·지원제외 및 유의사항은 [별첨1] 참고
 -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 해약)로 처리

□ R&D 기술료 징수관리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 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메뉴얼 > 온라인메뉴얼 > "기술료"검색 >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국가R&D법령메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8. 기타 공지사항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관련 규정(세부 관리지침 등)을 적용함
- 스케일업 팁스 통합 운영지침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운영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평가·협약 진행 중에 지원제외 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평가·협약 대상에서 제외(또는 협약 해약)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미확정으로, 향후 별도 공고에 따름

9. 설명회

스케일업 팁스 · 글로벌 팁스 · DCP 지원 통합설명회

- (일시) '26. 3. 19.(목), 14:00 ~ 16:00
- (장소) 역삼 팁스타운(S1) B1F 팁스홀 (온라인 유튜브* 중계 동시 진행)

* 유튜브 창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Live Streaming"으로 검색하여 접속

10. 문의처

문의내용	기관명	연락처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 평가, 유의사항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민간투자 조건, 신청 조건 확인 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02-3017-7074, 7076, 7080
매칭투자 관련 문의	한국벤처투자	02-2156-2471, 2211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

[별첨 1] 신청·지원 제외사항 및 유의사항

[별첨 2]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전략산업 분야

[별첨 3] 글로벌 팁스 신청 증빙 서류

[별첨 4] DCP 재공고 대상 RFP

[별첨 5]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별첨 6-1] 스케일업 팁스 특화운영사(24개 컨소시엄)

[별첨 6-2] 스케일업 팁스 특화운영사 문의처

별첨 1**신청 · 지원 제외사항 및 유의사항**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조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②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③ 기(既) 개발/기(既)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 ⑤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2-2130-1450, 1451) 또는 국번없이 1357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

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

마.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바.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 1)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경우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2) 공고 접수 마감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었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나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기관 자체 가결산자료는 제외한다.)

구분	주요내용
부채 비율	-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투자(CB, BW, SAFE 등)를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자본 전액 잠식	- RCPS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기준에 의해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두 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단, K-IFRS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적용 불가

-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만, 접수마감일이 3월 31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시까지 가능]
 -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⑧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 **유의사항**

- ①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내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및 졸업제를 적용하지 않음
 -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②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으로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 3책5공 제도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 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③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작성하여야 함
 -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 시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2]에 작성해야 할 부분 ※ 시스템 입력사항

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비용	현금/현물 구분 ¹⁾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 및 심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⑤ 스케일업 팀스(일반형, 특화형) 및 글로벌 팀스(일반형, 특화형) 사업은 투자 확약 후 선정평가 전까지 주금 납입 등 투자 절차 완료 필수

* 기간 내 투자절차 미이행 시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⑥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기술도전형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협약 체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투자절차(투자금 입금 등)가 완료되어야 함

* 기간 내 투자절차 미이행 시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적용사항

①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음

② R&D 졸업제 : 최대 5회까지만[단, 최근 7년간 3회까지(최근 7년의 시작연도는 `20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 가능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5회 이상(단, 최근 7년 간 3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수행 횟수는 `20년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을 한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졸업제 적용 및 예외 사업은 아래와 같음

㉠ `20~`23년 협약 과제의 졸업제 적용 및 예외 여부

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단, 디딤돌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전략형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연계, 백신원부자재 과제, 컨소시엄형 및 사업 연계형 기술개발 사업은 예외)

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단, 소부장 강소기업100+,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소부장 함께달리기, 스케일업 TIPS(출연 R&D) 과제, 그린벤처프로그램 R&D, 컨소시엄형 및 사업 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은 예외)

다.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사업

라. 상기 외 사업과 공고 당시 졸업제 예외로 명시한 과제는 졸업제 적용에서 예외

㉡ `24년 이후 협약 과제의 졸업제 적용 및 예외 여부

가. 졸업제 적용 사업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전체

나. 졸업제 적용 예외 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내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과제 및 스케일업 팀스 과제(스케일업 팀스는 `26년부터 투·융자연계 기술개발사업에 포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 TIPS 과제 및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과제, 투·융자연계기술개발사업,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사업,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등 공고 당시 졸업제 예외로 명시한 과제

③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적용을 달리 함

-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정공모과제 단위로 수행한 2개의 세부과제, 산학연 Collabo R&D사업의 컨소시엄형 과제에서 총괄기관으로 수행한 2개의 세부과제,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단계별로 연계 지원한 2개의 과제는 그 수행 횟수를 1개로 산정 함(단, 세부과제 또는 단계별 연계 지원을 통해 수행한 과제 수가 1개인 경우에도 1개로 산정)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경쟁형 과제, 산학연 Collabo R&D 과제 및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과제, 민관공동기술사업화(기술이전사업화, TRL 점프업), 글로벌협력형R&D 등 단계형 지원 과제(1단계 → 2단계)를 2단계까지

수행한 경우 과제 수행 횟수를 1개로 산정 함(단, 1단계 과제 수행 중에는 과제 수행 횟수를 1개로 계상하고, 2단계 과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선정평가 탈락이 확정된 경우 1단계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에서 제외)

< 졸업제 사업 수행 횟수별 단계형 사업 신청 및 수행 가능 여부 >

졸업제 과제 수행 횟수(최근 7년)	단계형 지원사업 신청 가능 여부	1단계 과제 수행 중 다른 졸업제 사업	2단계 탈락시 다른 졸업제 사업
3회	신청 불가	신청 불가	신청 불가
2회	신청 가능	신청 불가	1개 가능
1회	신청 가능	1개 가능	2개 가능

- `19년, `20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정기간 중에 있는 기업(강소기업에서 졸업 및 지정취소된 기업은 제외)이 수행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로 계상하지 않음

④ `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한정한다.(단, 졸업제 예외 사업까지 최대 2개까지 동시수행 가능하며,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한도는 아래 표를 참조)

- 수행 중인 과제 수 산정 대상은 `25년부터 협약하는 과제들로 하며, 기술개발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 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수행 중인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정공모과제 단위로 수행하는 2개의 세부과제와 산학연 Collabo R&D사업의 컨소시엄형 과제에서 총괄기관으로 수행한 2개의 세부과제는 수행 중인 과제 수를 1개로 산정

< 표 : 동시에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한도 >

`25년 이후 신규로 협약하여 수행 중인 과제 수	추가 수행 가능 과제 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예외 사업
0개	1개 가능	2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1개 (졸업제 적용 사업)	수행 불가	1개 가능
1개 (졸업제 예외 사업)	1개 가능	1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⑤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로 하며,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함

⑥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작성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 시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2]에 작성해야 할 부분 ※ 시스템 입력사항

3)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 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 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 ¹⁾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 및 심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보안과제 자체점검 결과 제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고, 점검표는 연구개발계획서의 붙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과제 분류 기준(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

관련 규정	구분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 과제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가목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나목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다목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라목	(5)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	(6) 그 밖에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자체점검은 본 공고문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계획서(본문1)의 [붙임] 3. 신청과제 보안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에 따라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 보안등급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	[] 신청용	보안등급	
	[] 협약용	일반[], 보안[<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해당 시 작성)	
...<이하 생략>...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보안과제로 지정될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의무 등은 [별첨 5]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은 신청 당시와 달라질 수 있음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연구개발기관은 자체점검 결과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별첨 5]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을 반드시 확인

별첨 2

지원분야(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신산업 분야)

국가전략기술 · 탄소중립 분야(13개 분야, 124개 품목)

분야	순번	품목명
반도체· 디스플레이	1	반도체 첨단패키징 제조·테스트용 소재·부품·장비
	2	첨단 모빌리티용 인지센서
	3	화합물 전력반도체 소재
	4	AI반도체 설계·최적화 회로 시스템
	5	반도체 첨단패키지 초미세 공정
	6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제조 및 검사
	7	차세대 프리폼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8	초미세 반도체 증착·식각 공정
	9	고집적·고성능 메모리 소재·공정·소자
	10	전력반도체 소자
	11	전기차용 전력변환 모듈·파워 IC
	12	극한환경용 저전력·자립형 센서
	13	초소형 MEMS 센서
	14	신축성 디스플레이 패키징 신공정
	15	디스플레이용 친환경·고효율·고색재현 양자점 소재·소자
	16	차세대 OLED 장비·부품
	17	노광공정용 소재·부품·장비
	18	초실감 디스플레이 제조·검사
이차전지	1	재사용 이차전지 제조·운용 시스템
	2	친환경·저비용 이차전지 양극 관련 소재
	3	이차전지용 고용량·고출력 양극 관련 소재
	4	열폭주 및 화재전이 차단시스템
	5	사용 후 배터리 고속·비파괴 모니터링 시스템
	6	배터리 지능형 통합관리 시스템
	7	고에너지밀도·경량화 이차전지 모듈 및 팩 제조시스템
	8	이차전지 친환경 소재 및 전극 생산 공정
	9	폐이차전지 재활용 및 회수 시스템
첨단 모빌리티	1	초고속·고효율 전기차 충전시스템
	2	수소 충전·저장밀도 향상 시스템
	3	고안전·고밀도 전기에너지시스템
	4	AI·SDV 융합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5	연료전지시스템용 내구안전성·효율향상 부품 및 시스템
	6	고성능 전기구동 및 고효율 전력변환 시스템
	7	고성능 자율주행 차량용 컴퓨팅 시스템
	8	UAM 소재·부품 및 양산화 시스템
	9	MaaS연계 자율주행 교통융합 서비스
	10	차세대 UAM 부품 및 시험평가 솔루션
차세대 원자력	1	고품질·단납기 소형 모듈 원자로 제조 공정
	2	SMR 건설·운영 기술 종합 솔루션
	3	고유안전성 극대화 솔루션
	4	고신뢰도 부지평가 및 고안전·고효율 처분시스템
	5	고준위방폐물 운반·저장 시스템
	6	이동형 원자력 시스템
첨단 바이오	1	바이오·의료 빅데이터 생산·분석 플랫폼
	2	오가노이드 기반 치료제
	3	mRNA 백신 고효율·저비용 생산 플랫폼
	4	바이오·의료 데이터 기반 AI 솔루션 및 플랫폼

분야	순번	품목명
	5	차세대 유전자 편집 시스템
	6	유전자 전달용 고효율 소재·전달체
	7	CAR 기반 유전자세포 치료제 및 플랫폼
	8	유전자 합성 및 유전체 제작 플랫폼
	9	초고속 스크리닝·성능평가 시스템
	10	빅데이터 기반 설계 시스템
	11	세포 유래물질 치료제
우주항공·해양	1	전자광학 탑재체
	2	고해상도 심해물리탐사 및 자원량 평가 시스템
	3	SAR 위상배열 안테나
	4	심해 자원 채광 시스템
	5	고압·고출력 터보펌프 시스템
	6	우주물체 감시·추적 통합시스템
	7	항공기용 고성능·장수명 가스터빈엔진 부품·장비
	8	차세대(6세대)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 부품
	9	1800K급 항공 터보팬 엔진 핵심 소재·부품·공정
	10	항공용 엔진 서브시스템
수소	1	고성능 수전해 시스템 핵심 소재·부품
	2	수소혼소식 소형 발전시스템
	3	수소연료전지 비상발전시스템
	4	액화수소 저장탱크
	5	대용량·고내구성 수소 저장·운송 핵심 소재·부품
	6	고강도 파이프라인 수송시스템
사이버보안	1	AI 특화 사이버보안 솔루션
	2	지능형 보안관제 자동화 시스템
	3	프라이버시 강화 솔루션
	4	SW 공급망 무결성 검증 시스템
	5	웹3.0 기반 탈중앙화 보안 솔루션
	6	지능형 영상보안 솔루션
	7	물리·가상 융합보안 솔루션
	8	랜섬웨어 감염 탐지·차단·복구 솔루션
	9	양자내성 기반 보안 전환 솔루션
	10	통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인공지능	1	자율성장 AI 플랫폼
	2	고성능 멀티모달 솔루션
	3	데이터 및 AI모델 최적화·경량화 솔루션
	4	대규모 분산·병렬 학습지원 서버 시스템
	5	뇌모사 인지 AI 시스템
	6	AI Transformation 적용 시스템
	7	다중 AI 에이전트 협업 시스템
	8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
	9	클라우드 최적화·관리 AI 플랫폼
	10	데이터 편향성 탐지 및 공정성 검증 시스템
차세대 통신	1	오픈랜 HW 및 시스템
	2	5G·6G 프론트홀·백홀용 전송 부품 및 모듈
	3	통신인프라 저전력화 솔루션
	4	오픈랜 가상화·지능화 소프트웨어
	5	기지국·중계기용 RF·안테나 부품
	6	5G 무선망 커버리지 확장 시스템
	7	초고속 6G 네트워크 시스템
	8	초저지연 네트워크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
	9	이동통신 단말용 RF·안테나 부품
	10	저궤도 위성통신용 단말

분야	순번	품목명
첨단로봇·제조	1	맥락지능 기반 물체 인식·동작 계획 솔루션
	2	소프트웨어 정의형 AI융합 범용 제어기
	3	가상 공장 구축 솔루션
	4	제조공정 디지털 자산 모델 생성 및 데이터 연동 솔루션
	5	인간-로봇 물리적 상호작용 시스템
	6	고부가 구동부품
	7	실내외 비정형 환경 주행기반 로봇 시스템
	8	소셜 상호작용 AI 시스템
	9	로봇 매니플레이터 조작·동작 자율 생성 시스템
양자	1	양자키분배 및 양자암호통신 부품·장비
	2	양자 자기장·전기장 센서
	3	양자 네트워크용 부품
	4	양자 원자시계 구동용 장치·부품
	5	양자 광기반 센싱 부품·모듈
	6	양자컴퓨터용 부품·장비
탄소중립	1	중소형 CO ₂ 포집시스템
	2	CO ₂ 화학 전환 시스템
	3	CO ₂ 광물 탄산화 시스템
	4	CCU 활용 친환경 SAF 제조 시스템
	5	DAC 연료생산공정 최적화 시스템
	6	분산전원 연계 태양광 운영 시스템
	7	고효율 태양광 모듈 및 장치
	8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9	고효율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

□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기술		
AI	· AI 모델·인프라	· 반도체	· 모빌리티
	· 양자·보안·네트워크	· 로봇틱스	
Bio	· 생명·신약	· 헬스케어	
Contents	· 콘텐츠		
Defence	· 방산·우주항공·해양		
Energy	· 친환경	· 에너지·원자력·핵융합	
Factory	· 첨단제조(센서·공정 등)		

별첨 3

글로벌 틱스 신청 증빙 서류

해외 투자 유치

구분	구분	서식명	세부내용
해외 투자	필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포함)	국내 법인의 지분구조 확인을 위한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주주명부 및 지분율 서식	별첨양식 제출
		해외VC 투자계약서· 해외 투자금 납입내역 사본	해외투자유치 계약서, 납입증명서, 외화송환증명서 등 제출
		해외 투자 기구 법적 실체 증빙 서류	(미국) Certificate of Limited Partnership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싱가포르) ACRA Bizfile Business Profile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GP 해외사실 확인서	별첨양식 제출
	금융감독기관 등록(또는 등록면제) 확인서	(미국) Form ADV (싱가포르)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선택	해외 투자 실적 및 운용 역량 증빙	자유 양식	

해외 매출

구분	연번	서식명(발급기관)	세부내용
해외 매출액 (서류 중 택)	선택	수출실적증명서(KITA, KTNET, KTSP)	공고일로부터 이전 3년간의 법인 해외수출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영세출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국세청)	

현지 법인

구분	구분	서식명	세부내용
해외 법인 설립	필수	해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현지 사업자등록증 포함)	해외 법인의 등기사항 및 사업자 등록 현황 확인을 위한 각 국가별 발급본 제출
		주주명부 및 지분율 서식	별첨양식 제출
	선택	현지기반 증빙(고용)	현지 직원 급여 세금 지불내역서(Form W-2), 특수관계인 부존재 확인서(별첨양식)
		현지기반 증빙(사무소)	현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서 등 제출
		현지기반 증빙(현지활동)	해외 고객사와 체결한 계약서, MOU, 구매의향서, 현지 세금 납부 증빙서류 등 제출

[해외 투자 서식설명]

- **(필수) 해외 투자 기구 법적 실체 증빙 서류** : 투자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공식 문서를 통해 조합의 명칭, 설립일, GP의 정보 등 법적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수) GP 해외사실 확인서** : GP가 작성한 별첨 양식을 통해 펀드의 실질 지배자 (GP or Management Company) 등이 해외에 소재하고 있고, 자금의 출처가 해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수) 금융감독기관 등록(또는 등록면제) 확인서** : 펀드의 GP(or Management Company)가 금융기관으로서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
 - * 국가 간 혼합 투자를 인정 받은 경우 투자에 관련된 모든 국가의 증빙을 갖추어야만 함
 - ** KVIC의 '해외VC 글로벌 펀드' GP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시 정보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함
- **(선택) 해외 투자 실적 및 운용 역량 증빙** : 자유 양식으로 해외 투자연혁 또는 이력, 해외펀드 운용실적 등 전문성 및 성장 지원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해외 매출 서식설명]

- **(선택) 수출실적 증빙서류** : 기간별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내 기관(KITA, KNET, KTSPI)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 그 외 용역, 무체물, 서비스 등의 수출실적은 국세청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한 영세율 매출명세서 또는 수출실적명세서를 발행하여 제출(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만 인정)

[현지 법인 서식설명] 국내 법인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법인을 신설하여, 현지 기반 실질적 현지활동과 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으로 활동하는 기업 대상

※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 예정 기업의 경우 인정 불가하며, 실질적인 운영 실체 입증

- **(선택) 현지기반 증빙(고용)** : 신청기업이 별첨 양식을 통해 "특수관계인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 현지 고용인력이 회사 대표자 또는 주요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님을 확인하고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ex. 美 IRS)에 제출하는 임금세금 명세서(ex. 美 Form W-2)를 통해 실제 급여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 **(선택) 현지기반 증빙(사무소)** :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ex. 美 IRS)에 제출하는 미국 법인세 증명서(ex. 美 Form 1120) 또는 현지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소유권 증서 등 제출을 통해 현지 사무소 운영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 **(선택) 현지기반 증빙(현지활동)** : 자유 양식으로 고용, 사무소 외 기타 현지활동 입증이 가능한 자료 기준(해외 고객사와 체결한 계약, MOU, 구매의향서, 세금 납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 자격검토 시 적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
 - ※ 미국, 싱가포르 이외 국가의 투자인 경우에도 위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투자 국가의 정부 및 금융감독기관이 발행한 법적 문서를 제출

별첨 4

DCP 재공고 대상 RFP

□ 프로젝트 목록

구분	전략기술	과 제 명
RFP-1	디스플레이	수율 99.999% 마이크로 LED 전사 및 접합 기술개발
RFP-5	이차전지	사용 후 배터리 폐전극의 친환경 전주기 재활용 기술개발
RFP-6	이차전지	저원가 고성능 나트륨이온전지(SIB) 양극재 제조 및 양산 기술 개발
RFP-8	첨단모빌리티	바이오매스 기반 모빌리티 디스플레이용 점착제
RFP-9	우주항공	BNNT 기반 우주용 신소재 및 상용화 제품 기술개발
RFP-14	수소	고활성 고내구성 메조포러스 탄소 및 연료전지 환원전극 개발
RFP-22	첨단로봇	VLM기반 자율임무형 다개체 다족형 로봇 통합제어시스템 개발
RFP-23	첨단바이오	차세대 AI 기반 안면복원 치료 통합 솔루션 기술 개발
RFP-24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공정용 스캔형 고속 레이저 어닐링 장비 기술 개발
RFP-25	반도체	HBM 적층 본더용 탄화규소 단결정 기반 고속 펄스히터 개발
RFP-26	이차전지	AI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팩 자동 해체 기술 개발
RFP-27	수소	바이오가스 이용 차세대 청정수소 생산시스템 개발 및 실증
RFP-28	첨단모빌리티	AI 기반 건식 후막 양극 제조공정 사업화 기술 개발
RFP-29	첨단로봇-제조	나노다공성 Organic-Free Ag Sheet 접합소재 실용화 기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임·직원
2.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 및 참여연구원
3.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평가위원회 참여자
4. 기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술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안규정을 마련하였을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분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해제하는 등 분류가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과제 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 여부를 재분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보안과제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한다.

1. 보안과제명
2.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3. 보안과제 분류 또는 해제 사유

제5조(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운영요령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연구기관보안대책”이라 한다.)으로써 별표1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을 통일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따르도록 한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연구보안책임자 지정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제5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연구보안책임자의 지정절차·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내에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변경(연구보안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개정 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보안대책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8. 보안과제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8조(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2.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3.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4.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서약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소속 연구자와 기타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히 보안상 필요한 경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 등) ①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 또는 외국인 등(본사와 지사의 소재가 다를 때에는 본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과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접촉(연구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 또는 특정하여 유의미한 정도로 접촉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촉 일시·장소·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재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퇴

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사항을 보고 및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제10조(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등) ① 보안과제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참여는 내국인을 통한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관하여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려거나 이들에게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승인하려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연구보안심의회의는 외국인의 보안과제에의 기여 가능성, 기술격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외국에의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었거나 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에 외국인을 참여시킨 경우 해당 사항이 발생하고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안과제에서 외국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을 위한 협약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또한 참여 외국인의 신상 및 과제 참여 범위, 과제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의 범위 등의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등급 표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문서와 다양한 형식의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등급을 구

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라 보안등급의 구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보안등급을 정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구분을 준용할 수 있다.

1. I급 :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
2. II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3. III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문서의 종류와 보안등급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12조(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보안수당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요령 제45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보안실태 점검을 계획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2. 이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4.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요령 제45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때에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 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안사고 경위 조사를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다.

1. 조사방식(서면 또는 현장) 및 조사시기
2.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3. 조사반 구성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연구개발결과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보안 과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운영요령 제 24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한 보안과제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했을 때 보안과제로의 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보안과제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4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및 통보한다.

제16조(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 ① 보안과제를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성과의 소유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부터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전받는 기관이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제4조부터 제16조의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비공개 연구개발성과에의 준용) 이 대책은 혁신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 제4조 및 제12조는 적용하지 않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비공개를 요청할 때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제9조와 제10조, 제14조, 제16조의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대행)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안과제의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관련 보안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조, 제9조 및 제10조, 제15조의 사무를 보안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해 과제의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며, 제13조, 제14조, 제16조까지의 사무는 필요시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요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으로서 제4조의 사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의 관리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있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전문기관에 두어 운영한다.

제19조 (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기관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5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 가.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운영 방법, 심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 나. 제17조 비공개연구성과에 보안대책 (보안대책 적용의 범위)
- 다. 연구개발기관 내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연구보안 책임자 지정, 연구보안책임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 라. 보안 우수자 및 보안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기준
- 마.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 절차
- 바. 소속 직원의 보안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사항

※.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우대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과 연구성과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핵심기술 판정 필요성과 후속조치 등

- 사.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실시에 대한 사항

2. 보안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관리

- 가. 참여연구자의 연구기관보안대책 위반 시 징계에 관한 사항
- 나. 퇴직하였거나 퇴직 예정인 자가 반출 또는 반출 예정인 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다. 참여연구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라. 보안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적이 있는 연구자의 외국 정부·기관·단체 접촉시 보고 및 외국 정부·기관·단체와의 연구 승인 등에 관련된 절차 및 형식 등 제반사항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 가. 보안등급 표기가 필요한 문서 및 데이터의 종류
- 나. 연구개발성과의 대외 공개 및 제공 시 사전신고 등 확인절차

4. 연구시설 관리

- 가. 보안과제 수행에 사용된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출입 절차

- 나. 연구개발기관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터 등 장비 등의 설치·운영
- 다.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 라. 연구실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입권한 차등화의 방법·기준, 출입현황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마. 외부인 및 외부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보안과제 관련 연구시설의 내부 출입통제 조치에 관련된 사항
- 바.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에 관련된 사항

5. 정보통신망 관리

- 가.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정보통신망 관리 조치
 - 1)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보안장비의 설치·운영
 - 2) 연구개발기관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3)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4) 정보시스템 사용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나. 보안과제에 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강화된 정보통신망 관리 조치
 - 1)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2) 내부망의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3) 정보통신 매체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외부 자료 전송 시 사전신고 등 보안조치
 - 4) 비인가 정보통신매체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 5) 정보통신매체 폐기 및 외부 이관시 보안조치에 관련된 사항
 - 6) 직책 및 업무에 따른 각종 전자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이외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이 필요시 추가적인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연구개발기관용) - 예시

본인은 “_____”과제 개발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비밀에 대해 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개발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 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가 완료되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00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명 : (인)

20

○○○ 귀하

별첨6-1

스케일업 팁스 특화운영사(24개 컨소시엄)

□ **스케일업 팁스(TIPS, Tech Investor Program for Scale-up) 특화운영사**

- 스케일업 팁스(특화형) 및 글로벌 팁스(특화형*)는 지정된 특화운영사(24개)를 통해서만* 신청·접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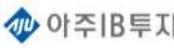
* 글로벌 팁스 '요건 2' 해당 기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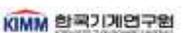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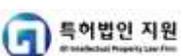
스케일업 팁스 특화운영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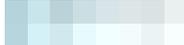
☞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보유하고, 전문인력 및 지원역량을 갖춘 VC와 연구개발전문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운영사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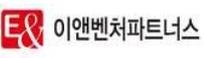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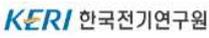
※ 성장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이 높은 스케일업 단계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투자하는 기관

No.	운영사 컨소시엄			특징
1	투자	이노폴리스 파트너스 		기술사업화, 제조전문 초기 벤처캐피탈, 기술중심 투자전문가로 구성, 지역기반 투자 성공사례 다수 보유
	기업성장	한국 과학기술지주 		정부출연연구기관(17개)이 공동 출자한 기술지주회사로 출연연의 우수기술을 사업화
		한국 자동차연구원 		자동차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완성차, OEM업체가 공동 설립, 연구개발, 시험인증 제공
2	투자	인라이트 벤처스 		소부장 등 지역소재 기업에 집중 투자, 한국소부장투자기관협의회 참여 VC
		인탑스 인베스트먼트 		모회사가 코스닥상장사, 삼성전자 모바일 및 가전부분 공급사, 테크펌 기업 육성 경험 다수 보유
	기업성장	인비전 아이피컨설팅 		인비전특허법인(국내 10위권)에서 분사한 기업으로 16개국 70개 로펌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특허 및 사업화 컨설팅
		대경지역대학 공동기술지주 		대구,경북지역 11개 대학 공동 출자 설립, 지역 우수기술 기반으로 사업화 추진
3	투자	L&S 벤처캐피탈 		삼성전자, 현대차 등 산업계 출신 전문심사역이 반도체/소부장/디지털혁신 등 전문 산업특화 펀드 운용
	기업성장	에트리홀딩스 		에트리 100% 출자 설립, 딥테크기반 스타트업 육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한 해외 진출 지원역량 보유
		이디리서치 		글로벌 마케팅 전략 수립 등 글로벌 진출 지원역량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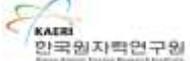
No.	운영사 컨소시엄		특징
4	투자	케이그라운드 벤처스 	출연연, 대학, 산업계의 혁신 IP/기술 발굴 및 사업화 투자 전문 벤처캐피탈
		DSC 인베스트먼트 	초기 기업 투자를 전문영역으로 하며 스케일업을 위한 후속 투자, 체계적인 투자사 경영지원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가능한 전문 벤처캐피탈
	기업성장	기술과가치 	정부 R&D 기획 및 컨설팅, 기술사업화 지원, Start-up Engineer, Start-up Marketer, Start-up Investor 역량 보유
5	투자	위벤처스 	대기업 CVC 및 창업경험 기반 투자전문성, 산업계 전반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조분야 투자 전문 벤처캐피탈
	기업성장	테크노베이션 파트너스 	R&D기획 및 전주기 관리 등 기술사업화 전문기업
6	투자	아주IB투자 	KOSDAQ 상장, 국내 1세대 대표 벤처캐피탈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등 벤처캐피탈 사업과 PE 사업을 동시에 영위
	기업성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6년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출연 종합연구기관이며, 2,200명 이상의 전문 연구원 보유
		고려대학교 의료원 	글로벌 수준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허브, 바이오메디컬분야 기술사업화 선두주자(최근 3년간 80건)
키스트 이노베이션 	KIST가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창업지원 성공사례 다수 (매출액 100억원 이상 9개사 배출)		
7	투자	대덕벤처 파트너스 	2014년부터 ICT, 소부장, 바이오 등 80여개사 투자, 지역 기반(대전/충청권) 및 공공기술사업화 투자 전문 VC
		롯데벤처스 	롯데그룹의 전략펀드를 운용하는 기업주도형 VC
	기업성장	유에이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IP분석, 기술거래, 글로벌 진출 등 지원, 지역기반 기술사업화 컨시어지 플랫폼 운영 (95% 이상 비수도권 기업 R&D 지원)
8	투자	캡스톤 파트너스 	2008년 설립된 뉴칼라 창업자 전문 투자 VC, 국내 최초 12년 최장기 펀드 결성
		퓨처플레이 	제품기획 및 고객 반응 분석하여 10년 내 미래를 바꿀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지원 하는 VC
	기업성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
		스파크랩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연합 GAN 회원사, 한국과 미국 내 법인 설립경험이 있는 운영진으로 구성
		미래과학 기술지주 	'14년 4개 과기특성화대학(KAIST, UNIST, GIST, DGIST)이 주축이 되어 설립, 과기특성화 대학의 연구성과를 직접 사업화하는 공공기술사업화 전문 회사

No.	운영사 컨소시엄			특징
9	투자	HB 인베스트먼트		1999년에 창업한 1세대 VC로 체계적인 밸류업 활동을 통해 투자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투자 파트너
		NVC 파트너스		기술창업가들이 성공적인 EXIT 경험을 공유하고자 설립한 테크핀 전문투자 VC. 성장단계의 Value-Up 컨설팅에 특장점 보유
	기업 성장	전략컨설팅 집현		기술혁신 정책 및 기업성장 전략 분야의 솔루션을 만들어 글로벌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선도해 나가는 국내 대표 기술경영-전략컨설팅 전문회사
10	투자	디티앤 인베스트먼트		D.N.A, 서비스플랫폼, 바이오·헬스케어 등 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VC
	기업 성장	(주)내비온		실험실 딥테크 컴퍼니 빌딩 및 기술사업화 (Lab-to-Market) 엑셀러레이터, 테크핀의 글로벌 스케일업 및 오픈이노베이션 관련 전주기 컨설팅 서비스 기업
		(주)디티앤씨		시험인증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기업, 정보통신기기, 의료기기, 자동차 전장 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내 R&D 인증 서비스를 제공
11	투자	플래티넘 기술투자		소부장 분야에 주로 투자하고, 초기 투자 기업을 계속 지원하고 후속 투자하는 VC
		유비쿼스 인베스트먼트		2차 전지, 에너지 등 4차 산업 분야 전문 VC
	기업 성장	한국기계 연구원		1976년 개원한 소부장 중심의 정부출연 연구소로 574명의 전문 연구원 보유, 기술이전 156건 완료('21)
		부산연합 기술지주		부산시와 부산지역 16개 대학이 출자하여 만든 기관으로 부울경 지역 초기 제조/하드웨어 및 기술 기반 기업에 투자 및 컨설팅을 지원
		특허법인 지원		호남권, 영남권에 특화된, 창업기획자, 기술거래기관 등 다양한 자격을 보유한 특허법인
12	투자	타임웍스 인베스트먼트		창업 초기, 소부장 투자 전문역량을 기반으로 우수 테크핀 육성의 마중물 역할에 집중하는 벤처 캐피탈
		iM투자 파트너스		DGB금융그룹 계열 벤처캐피탈. 테크핀으로 체계적인 밸류업 시스템, 산학연 및 금융그룹 시너지 네트워크를 통해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 지원
	기업 성장	(주)유원솔루션		테크핀 전문 변리사, 기술거래사, 가치평가사로 구성된 사업화팀을 통해 맞춤형 R&D 기획, 기술사업화 및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No.	운영사 컨소시엄			특징
13	투자	BSK 인베스트먼트		초기부터 Pre-IPO까지 스케일업에 특화된 첨단 제조·하드웨어 섹터 전문 투자기업
		동문파트너즈		2010년 설립한 콘텐츠, 딥테크, 플랫폼, 소부장 등 기술 기반 창업 초기 전문 투자기업
	기업성장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전자·IT분야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견인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산하 기술사업화 전문 공공 기관으로 기술 거래 IP평가,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업 성장 지원
		선영파트너즈		R&D, 기술사업화, 글로벌 진출, 성장 전략 등 R&D 전주기 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컨설팅 전문기업
14	투자	SK증권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Deep-tech 전문 국내외 전주기 투자 역량 보유
		티인베스트먼트		평균 투자경력 15년 이상의 투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4차 산업에 핵심 투자하는 테크핀 전문 VC
	기업성장	연세대학교 기술지주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STARTUP TIPS 운영사로 연구 역량 강화와 우수 기술의 실용화 지원
		나이스평가정보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서 기술평가, 기술거래, 신성장 동력 기술사업화 등 기업성장 및 기술특례상장 지원
		에이치앤피 파트너즈		연구개발전문회사로 R&D 기획부문과 특허부문 계열사로 구성, IP기반 사업화 및 투자전략 수립 역량 보유
15	투자	데일리 파트너즈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 벤처캐피탈로, 누적 운용자산 (AUM) 규모 4,029억원,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 93개사 보유. VC, AC, PE 라이선스를 보유하여 Seed ~ Pre IPO 및 상장사 메자닌 투자 진행 중
	기업성장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흥재단		혁신신약 최적화 지원과 차세대 플랫폼기술 구축 R&D연구기관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 R&D 연구기관
16	투자	세마 인베스트먼트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출자한 창투사로 우수 공공기술 기반 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
		마그나 인베스트먼트		초기기업, 중소/ 중견기업에 특화된 VC, Private Equity 운용사
		케이투인베스트 먼트파트너즈		글로벌 기술 경쟁력 통해 해외에서 수익 창출 가능한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테크핀 전문 투자기업
	기업성장	(주)에스와이피		변리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부터 사업화, 초기투자까지 기업 전 주기를 지원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반 사업화 전문회사이자 액셀러레이터
		글로벌디지털 혁신네트워크		국내 디지털 분야 기술기업 해외진출 전문기관. 전문 컨설팅,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 테크매칭,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운영

No.	운영사 컨소시엄			특 징
17	투자	스케일업 파트너스		팁스 및 스케일업팁스 동시 운영사로서 딥테크 기반 잠재 유니콘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전주기 스케일업 프로그램 보유 컴퍼니빌더형 VC
		엠씨 파트너스		신성장 산업분야에 집중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SI 투자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업 성장	애니파이브		국내 1위의 지식재산권 솔루션과 핵심기술 보유 통합서비스 플랫폼(싱켓)과 Cloud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 및 통합운영서비스 운영
		이크레더블		기술특례상장 평가 및 자문 기술가치 평가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술평가기관
		고려대학교 기술지주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창업과 교원, 학생 창업에 특화된 전문 투자, 육성 기관
		KIC Washington		과학기술·ICT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과 연구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현지 허브 기능을 수행
제타플랜 인베스트		2006년 설립 AC로 기술사업화 산업부장관상 경력보유, 중국, 베트남, 인니 지사 및 해외 파트너 보유 IP 사업화 기관		
18	투자	원익 투자파트너스		딥테크 기반 소부장 기업과 ICT 서비스에 집중 투자하는 업력 26년 전통의 VC
		이앤 벤처파트너스		산업계 및 투자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로 구성된, 지역소재 기술기반 혁신스타트업에 투자하는 VC
	기업 성장	웍스		전세계 특허데이터와 공공 기술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술평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초기 창업투자 등 지식재산(IP) 토탈 서비스 제공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국내 1호 대학기술지주회사로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투자 및 보육, R&D 자금 연계,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한국전기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내 유일의 전기 전문 연구 기관

No.	운영사 컨소시엄			특징
19	투자	유진투자증권 	중소벤처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금융계열사 활용 전주기 금융 솔루션 지원 역량, 제조분야 그룹사 사 업 연계 지원 및 오픈이노베이션 역량 보유	
		안다아시아 벤처스 	4차산업 전문투자사로서 상장사/중견기업과 함께하는 멘 토링협의체 운영 등 차별화된 밸류업 강점 보유	
	기업 성장	특허법인 다나 	국내 상위 특허법인으로서 정부지정 IP기반 R&D기획, 기술거래, 기술사업화, 기술가치평가, 수출바우처, 특 허 등 지식재산권 관리 등 전문기관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중소·중견기업 생산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 전국 특화분야별 현장밀착형 기업지원 체계 운영, 중소기업 대상 시험장비 및 계측기기 개방 운영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전 산업분야 시험인증, R&D, 기술서비스 제공하는 국내 대 표 기술서비스 기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네트 워크 보유 및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	
		드림 씨아이에스 	Global CRO 그룹 Tigermed 계열사로 52개국 Global Network 보유, 1,700건 이상의 IND/NDA 인허가 컨설 팅 경험 및 2,200건 이상의 임상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을 보유한 임상시험수탁기관	
키프론바이오 	국내 최대 비임상 CRO 바이오톡스틱 그룹 계열사, 초기신약 개발 및 비임상 평가 전문 기업 인체용/동물용 의약품 개발능 력 자체보유, 연 500건 이상의 시험 수행역량			
20	투자	삼성벤처투자 	삼성의 경영 노하우와 신뢰성을 바탕으로선진 투자기법 과 제도를 도입해 국내 벤처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 해 설립한 벤처투자사	
	기업 성장	다래전략 사업화센터 	창업기업이 필요한 R&D전략수립, BM기획, IPO컨설팅 등 기술사업화 전문성을 갖춘 액셀러레이터 기관	
		성균관대학교 기술지주 	교원창업기업 자회사 설립 및 운영지원, 자회사 연구소 기업 설립 지원 및 투자컨설팅·투자연계를 지원하는 기 술사업화기관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분석과학 연구장비의 개발, 성능평가개선 및 국산장비 의 활용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내 연구산업의 성장 을 선도하는 연구개발 기관			
21	투자	에코프로 파트너스 	'25년 1월말 기준 약 2,200억원의 AUM 운용 중, 주요 투자분야는 에너지/환경으로 다수의 지방전문펀드 운용 및 지역활성화 노하우를 보유	
		현대차증권 	현대차그룹 소속 신기술사업금융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투자전문 회사로 현대차그룹의 오픈이노베이션 펀드인 'HMG 제로원 조합'을 운용	
	기업 성장	한국스마트 컨설팅협회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사 업화 지원 등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과 지역 중소기업 업의 성장지원	
		한국컴파스 	세계 최대의 B2B마케팅 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수 출입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Global Company로서 국 내 수출기업의 해외 거래선 발굴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네모아이씨지 	한국을 본사로 8개국 12개 사업 부문에서 180여명의 상근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는 25년 경력의 종합 컨설팅그룹 으로 R&D 기획, 기술자문 및 사업화컨설팅 제공	

No.	운영사 컨소시엄			특징
22	투자	엘에스케이 인베스트먼트		국내 최초 바이오 산업분야에 특화된 독립계 VC로서, 신약 개발,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산업내 핵심 밸류체인 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
		엔에이치 벤처투자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설립된 신기술금융회사로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
	기업 성장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첨단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원천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국내외 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공공 인프라를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준성특허 법률사무소		BigData 기반 IP-R&D 및 글로벌 사업화 전략 컨설팅이 가능한 컨설팅기관으로 IP-R&D 전문성, DCP 기술사업화 및 스케일업 풍부한 경험, Data driven 전략 컨설팅을 강점으로 창업팀의 글로벌 진출과 스케일업을 지원
23	투자	우리벤처 파트너스		국내 1세대 벤처캐피탈로서 ICT, 바이오&헬스케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투자, 우리금융그룹, 해외거점(미국, 싱가포르, 상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
		교보증권		교보생명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종합 증권사로 투자, 기업금융, IPO 및 M&A 매각자문, 경영 컨설팅 등 기업영속에 필요한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
	기업 성장	인포뱅크		모바일 / 메시징 서비스 및 스마트카SW 전문기업으로, 30년간의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기술과 2만 5천여 고객사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지원과 IP 및 투자, 스케일업을 지원
		티비즈		IP권리화, 액셀러레이터,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연구개발컨설팅전문회사로서 IP를 활용한 사업화 및 전주기적인 기술사업화 전략을 제공
		킬사글로벌		지속 가능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Global Growth Platform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현지화, 밸류체인 현지화, 운영의 현지화를 실현
	24	투자	컴퍼니케이 파트너스	
기업 성장		대전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창업을 촉진하며,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로봇 등 차세대 과학분야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
		카이스트청년 창업투자지주		2014년 KAIST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100% 출자한 대학 내 투자회사로서 글로벌 파트너 및 대기업과의 협업으로 초기투자 및 스타트업 성장지원
		한국원자력 연구원		딥테크 분야 우수 R&D 성과를 기반으로 산업 연계 지역 특화 시설을 통해 창업팀의 스케일업을 지원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사회적 문제해결과 첨단산업을 위한 차세대 양자측정표준확립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양자기술 연구에 주력		

별첨6-2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별 문의처

구분	운영사	대표전화	이메일
1	(투자) 엘앤에스벤처캐피탈	02-501-1249	info@lnsvc.co.kr
	(기업성장) 에트리홀딩스	042-860-0685	jhjeon77@etriholdings.com
	(기업성장) ㈜이디리서치	02-6177-7401	jsyong@edresearch.co.kr
2	(투자) 위벤처스	02-565-6671	info@weventures.co.kr
	(기업성장)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02-6917-5500	ys1218@tenopa.co.kr
3	(투자) 이노폴리스파트너스	02-541-0855	jjipark@innollc.com
	(기업성장) 한국자동차연구원	041-424-7016	leehm@katech.re.kr
	(기업성장) 한국과학기술지주	042-862-8693	tkpark@ksthholdings.co.kr
4	(투자) 인라이트벤처스	053-341-9222	info@enlightvc.com
	(투자) 인탑스인베스트먼트	02-567-2500	yunhyuk19@intops.co.kr
	(기업성장) 인비전아이피컨설팅	070-4070-4473	mirayu@envisionpat.com
	(기업성장)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053-721-7055	kwang7180@dgth.co.kr
5	(투자) 케이그라운드벤처스	02-3443-4579	info@kground.co
	(투자) DSC인베스트먼트	02-3453-3192	seongmin.kang@dscinvestment.com
	(기업성장) 기술과가치	02-3479-5004	wonyon@empas.com
6	(투자) 대덕벤처파트너스	042-485-9684	jhjeong@dvpdvp.com
	(투자) 롯데벤처스	051-747-1530	daewoo.lee@lotte.net
	(기업성장) 유에이드	042-476-1645	benny@uaide.kr
7	(투자) 디티앤인베스트먼트	02-6219-4002	techoi@dtni.co.kr
		02-6219-4000	tax@dtni.co.kr
	(기업성장) 내비온	02-6407-7734	moon@navion.biz
		02-6407-7720	shcho@navion.biz
(기업성장) 디티앤씨	031-326-5529	shin@dtnc.net	
8	(투자) 아주IB투자	02-3451-9256	qkstjr0901@ajuib.co.kr
	(기업성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02-958-7282	path@kist.re.kr
	(기업성장) 고려대학교 의료원	02-3407-4001	wooju2014@korea.ac.kr
	(기업성장) 키스트이노베이션	02-958-6694	leebw@kist.re.kr
9	(투자)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02-3448-5614	yhko@hbvc.co.kr
			yjyoon@hbvc.co.kr
	(투자) 엔브이씨파트너스	051-914-0938	info@nvcp.kr
(기업성장) 전략컨설팅집현	02-6475-5025	sdlee@nvcp.kr	
10	(투자) 캡스톤파트너스	02-575-1210	yangsun@withwisers.com
	(기업성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061-320-9833	biz@cspartners.co.kr
	(투자) 퓨처플레이	02-557-1805	hylee@kentech.ac.kr
	(기업성장) 스파크랩	02-2231-3014	im@futureplay.co
	(기업성장) 미래과학기술지주	042-349-3112	tips@sparklabs.co.kr
			tips@miraeholding.com

구분	운영사	대표전화	이메일
11	(투자) BSK인베스트먼트	02-538-0460	bbsnew@bskinvest.com
	(투자) 동문파트너즈	02-2265-0566	hyung@egpartners.co.kr
	(기업성장) 한국전자기술연구원	031-789-7914	sbheo@keti.re.kr
	(기업성장)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26	ipto@kipa.org
	(기업성장) 선영파트너스	02-6105-7132	best@sypartners.co.kr
12	(투자) SK증권	02-3773-9991	ORG2021@sks.co.kr
	(투자) 티인베스트먼트	02-568-8581	shbae@tinvestment.co.kr
	(기업성장) 연세대학교기술지주	02-2123-5144	worry1004@yonsei.ac.k
	(기업성장) NICE평가정보	02-2124-6822	st_service@nice.co.kr
	(기업성장) 에이치앤피파트너스	02-571-9977	spkim@hannp.com
13	(투자) 아이엠투자파트너스	02-761-8600	jyyang@im-investment.com
	(투자)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02-6956-8083	pjt0915@twinv.co.kr
	(기업성장) ㈜유원솔루션	02-571-1616	hwkhang@ipuone.com
14	(투자) 플래티넘기술투자	02-6246-3118	sn@pltic.co.kr
	(투자) 유비퀵스인베스트먼트	070-7770-9935	jmlee@ubinv.com
	(기업성장)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051-717-2407	mhsong@buholdings.co.kr
	(기업성장) 특허법인 지원	02-6268-4862	joanna@g1pat.com
	(기업성장) 한국기계연구원	042-868-7921	bbj77@kimm.re.kr
15	(투자) 데일리파트너스	02-6953-5991	ac@dayli.partners
	(기업성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053-790-5732	ahnyoungtae@kmedihub.re.kr
16	(투자) 세마인베스트먼트	02-3484-7072	hjlee@semainv.com
	(투자) 마그나인베스트먼트	02-554-2222	nnjvv2001@mgni.co.kr
	(투자)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070-4468-8761	hs.jung@k2investment.co.kr
	(기업성장) 에스와이피	070-8644-9053	ysh@sypip.com
	(기업성장)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031-8039-6738	kbs@gdinfoundation.com
17	(투자) 스케일업파트너스	02-551-2090	tips@supartners-cg.com
	(투자) 엠씨파트너스	02-555-3747	bheum@mcpartners.co.kr
	(기업성장) 고려대학교기술지주	02-3290-5887	daewoo7010@korea.ac.kr
	(기업성장) 애니파이브	02-2082-2600	yilee@anyfive.com
	(기업성장) 이크레더블	02-6309-4690	jykim@ecredible.co.kr
	(기업성장) 제타플랜인베스트	02-561-6698	zetabiz@zetaplan.com
	(기업성장) KIC Washington	02-538-4801 +1-571-405-6220	kic@kicdc.org
18	(투자) 원익투자파트너스	02-6446-7170	hyoon@wonik.com
	(투자) 이앤벤처파트너스	02-569-3459	jgjung@envp.co.kr
	(기업성장) 윱스	02-726-1165	hjhong@wips.co.kr
	(기업성장) 한국전기연구원	062-606-7342	jobk21@keri.re.kr
	(기업성장) 한양대학교기술지주	02-2220-4072	jhkim511@hyuholdings.com

구분	운영사	대표전화	이메일
19	(투자) 유진투자증권	02-368-6173	psh0070@eugenefn.com
	(투자) 안다아시아벤처스	02-569-6705	wy.jang@andaasiavc.com
	(기업성장) 특허법인 다나	02-6957-9909	sknoe@danapat.com
	(기업성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62	b2k82@ktr.or.kr
	(기업성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41-589-8314	kmpark@kitech.re.kr
	(기업성장) 키프론바이오	043-210-7799	minyoung.kim@keyfronbio.com
	(기업성장) 드림씨아이에스	02-2010-4507	jae-beom.lee@tigermedgrp.com
20	(투자) 삼성벤처투자	02-2255-0299	Eshinyoung.stan.lee@samsung.com
	(기업성장) 다래전략사업화센터	02-3475-7711	ksh@daraebiz.com
	(기업성장)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031-290-5083	cilee@skku.edu
	(기업성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042-865-3516	jhjeong86@kbsi.re.kr
21	(투자) 에코프로파트너스	02-6920-6508	vitamink@ecopro-partners.com bsy0250@ecopro-partners.com
	(투자) 현대차증권	02-3787-2169	KYT1041@hmsec.com jw@hmsec.com CYKIM@hmsec.com
	(기업성장)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02-553-3808	yclee@korsca.kr
	(기업성장) 한국컴파스	02-2200-0800	jjin@kompass.co.kr
	(기업성장) 네모아이씨지	031-781-7060	minkyun@nemoicg.com
	(투자) 엘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	02-553-9631	jskoo@lski.co.kr
22	(투자) 엔에이치벤처투자	02-6357-6714	office@nhvic.com
	(기업성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42-860-4543	syshin@kribb.re.kr
	(기업성장) 준성특허법률사무소	02-557-9955	js.lee@joonsungip.com
	(투자) 우리벤처파트너스	070-4377-2019	eunb@woorivp.com
23	(투자) 교보증권	02-3771-9106	kyobovc@iprovest.com
	(기업성장) 인포뱅크	031-628-1500	startup@infobank.net
	(기업성장) 티비즈	02-6405-3271	tbiz@tbizip.com
	(기업성장) 킬사글로벌	02-6925-2243	kevin@kilsaglobal.com
	(투자) 컴퍼니케이파트너스	02-568-8512	harry0629@kpartners.co.kr
24	(기업성장) 대전테크노파크	042-930-4891	kyj1984@djtp.or.kr
	(기업성장)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02-6494-7773	info@kaist.vc
	(기업성장) 한국원자력연구원	042-868-2358	dakkm@kaeri.re.kr
	(기업성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042-868-5416	mazonna@kriss.re.kr